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2. 19 선고 2018가단52870(본소), 2018가단65241(반소) 판결
[공사대금 · 손해배상금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박서남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정

담당변호사 유택근

변 론 종 결 2020. 2. 5.

판 결 선 고 2020. 2. 1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4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2020. 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7/8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9,434,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7,496,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9.경 피고로부터 C 울산공장에 전기집진기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이하 ‘울산 C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2015. 12.경 설치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하자 보수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6. 피고로부터 ‘울산 D 전기집진시설 설치공사’(이하 ‘울산 D 공사’라 한다)를 공사 기간을 2016. 5. 6.부터 2016. 7. 25.까지, 공사대금을 1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6. 7.경 울산 D 공사 현장에 전기집진설비를 납품하여 설치하였으나, 2016. 8. 16.부터 3차례에 걸쳐 부속설비인 활성탄 필터 부분(AC TANK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8. 피고로부터 ‘음성 E E-PAC 2기 제작 설치공사’(이하 ‘음성 공사’라 한다)를 공사 기간을 2017. 3. 6.부터 2017. 4. 30.까지, 공사대금을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7. 9.경에 음성 공사 현장에 위 설비를 설치하였고, 이후 운전 과정에서 용접 불량

등의 원인으로 인한 집진기 하부 누수, 패킹상태의 불량으로 인한 측면부위 셀투입구 문틈으로 누증현상 등이 발생하였고, 전기부품인 애자 부분에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집진실 및 셀이 파손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는, 울산 D 공사의 미지급 대금 64,900,000원(추가공사대금 5,500,000원 포함)과 음성 공사의 미지급 대금 42,900,000원(추가공사대금 3,300,000원 포함)의 합계 107,800,000원에서 울산 C 공사 및 음성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비의 합계 78,366,000원을 상계한 나머지 29,43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울산 D 공사의 경우도 AC TANK 및 활성탄 부분은 피고가 설계, 제작, 설치하였으므로, 그 부분의 하자보수비는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

원고는 음성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공사를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104,500,000원이다.

그런데 위 각 공사 현장에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써 110,906,000원과 이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인 121,99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17,49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음성 공사의 추가 공사금액 3,300,000원에 관하여만 다툼이 있는바, 증인 F, G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음성 공사 현장에 3,300,000원을 들여 추가 공사를 하였다거나 이러한 추가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위 각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에 관한 판단

(1) 울산 C 공사 및 음성 공사에 관하여는 감정인 H의 감정 결과와 같은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울산 C 공사에 합계 54,653,000원의 하자보수비가, 음성 공사에 합계 23,713,000원의 하자보수비가 소요됨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각 증거, 증인 F의 증언, 감정인 H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울산 D 공사에 관하여는 원고가 탱크 내부에 활성탄 장착시 냉각을 위한 장치나 내부 공간 등이 고려되지 않게 AC TANK를 설계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하자를 보수하는 데에 합계 32,54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피고가 위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수급자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그 하자보수를 요하는 경우에 도급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도급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자가 수급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등 참조), 을 제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위 하자보수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10,9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피고가 2018. 7. 12.자 준비서면으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준비서면이 2018. 7. 13.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6,406,000원(= 110,906,000원 - 10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18. 9. 13.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2. 19.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수